

대구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316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도, 정수희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140491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08,041,643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08,041,64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D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업장에 대한 양도계약과 D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4.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041,6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은 감축하였으며, 피고 C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D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업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7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D에게 1억 540만 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D과 사이에 공증인가법무법인 E 증서 제2019년 제17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변제기 2021. 10. 20.

② 변제방법 2019. 5.부터 2021. 9.까지 29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고 2021. 10. 20.에 7,640만 원을 변제한다.

③ 이자는 없고,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에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2019. 5.부터 2021. 6.까지 26개월 간 매월 100만 원, 2021. 7.부터 8.까지 2개월간 각 50만 원을 변제받아 총 2,700만 원(= 100만 원×26개월 + 50만 원 × 2개월)을 변제 받았다.

다. D은 자신이 소유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치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I'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2020. 5. 7.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D의 아들인 피고 B은 2019. 6. 1.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구 수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라. D은 2020. 2. 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0. 2. 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0.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5억 5,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2. 7. 위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 C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인 108,041,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

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7,840만 원(=1억 540만 원 -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였던 D이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D이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21,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피고 C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사용내역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 C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400만 원을 동액 상당에서 상계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총 6,400만 원을 자신의 자녀들인 O, R 및 피고 B에게 채무변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D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일부를 피고 C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피고 C와 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우선변제 하였다고 보이고, 자녀들인 O, R 및 피고 B에 대한 위 대금지급도 정당한 변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O, R, 피고 B이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D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의 선의 항변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C는 D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① 피고 C와 D은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 C의 남편 AB과 D의 남편은 고향 친구사이이다.
- ② 피고 C의 남편 AB은 D이 운영하던 가구공장에서 약 6년간 일하다가 퇴사하였는데, AB이 퇴사한 이유는 D의 가구공장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 ③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별도의 집이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고, D은 2018.경 피고 C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 ④ D은 201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고 그 당시 9억 원에 매매 제의가 있었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도 D은 피고 C의 남편 AB에게 매수인을 소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였으며, 결국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7억 8,000만 원에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매매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2. 4.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7억 8,000만 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도 위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460,451,05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약 319,548,940원(7억 8,000만 원 - 460,451,051원)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은 잔존 대여금 원금 7,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변론종결일 전날인 2023. 5. 18.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29,641,643원(= 7,840만 원 × 24% × 575/365일, 원 미만 버림)을 합한 108,041,643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소액인 피보전채권액 108,041,643원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108,041,6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8,041,6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D이 운영하던 I의 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내의 가구, 인터넷 사이트 등을 그대로 양도받아 사업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9. 6. 1.경 사업장에 대한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양도계약은 D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피고 C와 각자 원고에게 108,041,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D과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D 운영의 I와 같은 주소지에서 새로운 사업인 F를 창업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원고는 D과 피고 B 사이에 2019. 6. 1. D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유체동산, 임대차보증금, 시설물, 영업권 등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영업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D과 피고 B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 B이 2019. 6. 1. D이 사업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F'라는 상호로 동일한 업종인 가구판매업을 개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F의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에 'Since 1987 (구)AC가 2019년 F로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7, 17, 18, 19,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과 피고 B 사이에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D이 운영하던 I는 2018년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약 1,700만 원에 불과하고, 2019년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은 약 180만 원에 불과하여 2019. 6. 1.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영업양도양수계약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I의 인적·물적 조직이 피고 B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D이 판매하던 가구의 재고가 일부 피고 B의 사업장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구들은 판매 가능한 경제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D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어떠한 물적 조직과 인적 조직이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오히려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20. 2.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20. 2. 11. 보증금 3,000만 원을, 2020. 2. 12. 1년분의 차임 3,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D이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및 연월세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비용을 D이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여 영업이 포괄적으로 D에게서 피고 B에게로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 B과 D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최서은, 판사 윤남현, 판사 손운경

[별지1]

사업장의 표시

1. 사업체명 : I
2. 사업자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3. 대표자명 : D
4. 설립일자 : 2012. 1. 1.
5. 사업장 주소 : 경상시 AD
(지번 : 경상시 J, AE, AF, AG). 끝.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 경산시 J 공장용지 473㎡
2. 경산시 AE 공장용지 343㎡
3. 경산시 AF 공장용지 460㎡
4. 경산시 AG 공장용지 255㎡
5. 경산시 J, AE, AF, AG 위 지상
일반 철골구조 기타지붕(그라스울판넬) 2층 공장
1층 일반철골구조 공장 395.25㎡
1층 일반철골구조 사무실 172.42㎡
2층 경량철골구조 기숙사 110.7㎡
6. 경산시 AH 도로 11㎡. 끝.

1) 원고는 '2020. 2. 7.'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나,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0. 2. 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